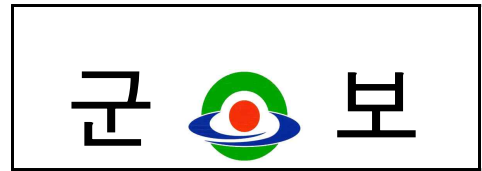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25호 2023. 2. 20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3-331호)

○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33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 공고 제2023 - 331호
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

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등록 및 폐기 사유 : 마멸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
2. 등록 및 폐기 개시일 : 2023년 2월 24일
3. 등록 및 폐기 공인내역 : 붙임과 같음

2023년 2월 20일

예 천 군 수

신조 공인 내역

구 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	인 영	비 고
재등록	예 천 읍 수 입 금 출납원인	훈민정음체 1.8cm×1.8		
재등록	예 천 군 수 입 금 출납원인	훈민정음체 1.8cm×1.8		
재등록	예 천 군 징수관인	훈민정음체 2.0cm×2.0		

폐기 공인 내역

구 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	인 영	비 고
폐기	예 천 읍 수 입 금 출납원인	전서체 1.8cm×1.8		
폐기	예 천 군 수 입 금 출납원인	전서체 1.8cm×1.8		
폐기	예 천 군 징수관인	전서체 2.0cm×2.0		

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0일

예 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주변 지역(청북1, 2리) 지원 등에 있어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불만 해소와 장기적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사업 정비(안 제4조)

- 군수 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

나.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구체화(안 제6조)

- 구성인원 10명 이내
 - 주민대표 5명, 예천군의회 의원 2~3명,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및 법률전문가 각 2명

다. 기금의 가구별 지원범위 정비(안 제12조)

- 주변영향지역 지정 고시지역 → 지정 고시지역과 처리시설이 인접한 리단위 지역으로 확대

3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환경관리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

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기타

- 보내실 곳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
- 전화 : 054-650-6172, 팩스 : 054-650-6179
- 전자우편 : iwanclub@korea.kr

라.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www.ycg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
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역개발계획에 반영)”을 “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3의 지원사업
2. 그 밖에 군수 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10명 이내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에서 선정한”을 “와 협의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제6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4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각 1명.

제11조제1항 중 “생활환경담당주사로”를 “청소관리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”를 “의거 직

접영향권지역으로 고시하거나, 지정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범위내 인접한 리단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역개발계획에 반영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<u>1.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</u> <u>2.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</u> <u>3. 주민 자녀들의 장학 사업</u> <u>4.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</u>	제4조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<u>1.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3의 지원사업</u> <u>2. 그 밖에 군수 또는 제6조 규 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제6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· 운영)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· 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천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 다)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5명 2. ·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· 운영) ① ----- ----- --- <u>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 1. ----- ----- ----- -- <u>와 협의한</u> ----- 2. ·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또는 법률분야 전문가 각1명.</u>

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1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생활환경담당주사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.

② -----
-----.

1. 제4조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간사 및 수당) ① -----
----- 청
소관리팀장으로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의거 직접영향권
지역으로 고시하거나, 지정고시
가 되지 않는 경우 영 제20조
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법위내
인접한 리단위---